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

2004. 5

환경부

1. 개정이유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(2003. 5. 29, 법률 제6911호) 하위법령 규제심사(2004. 4. 2)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환기설비 설치의무의 소급적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, 부처협의 결과의 반영 및 입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지하도 상가중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은 제외하는 팔호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제1항제2호).
- 나. 법 제9조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제3항).
- 다. 법 제11조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대상에 공동주택을 추가함(안 제11조제2항).
- 라. 부칙 제2항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(안 부칙 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의 :
- 라. 기타 :

법률 제 호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지하도상가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1조제2항중 “다중이용시설”을 “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”으로 한다.

부칙 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대상)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지하도상가(지상건물에 땔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)</u></p> <p>3. ~ 11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적용대상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지하도상가</u></p> <p>3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1조(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) ① (생 략)</p> <p>②<u>다중이용시설을 설치(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)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부 칙<제6911호, 2003.5.29></p> <p>②(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</p>	<p>제11조(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부 칙<제6911호, 2003.5.29></p> <p>②(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</p>

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.
다만,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과조치) -----

-----.
<단서삭제>

〈소관 부서명〉

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	
연 락 처	(02) 2110-6813,8